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 內 事 件

用新案權利範圍確認

〈大法院 第3部 判決〉(1982. 1. 26)

- 裁判長：大法院判事 김 덕 주
 關與法官： " 김 증 서, 정 태 균, 윤 일 영
1. 被審判請求人(上告人)：박 찬 인(경기 수원시 고등동 74의 3)
 2. 審判請求人(被上告人)：협신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경기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18)
 3. 原審決：特許廳 1980. 11. 18字, 抗告審判당 第61號 審決
 4. 主 文：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被審判請求人의 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本件考案은 무늬가 彫刻된 판채를 대판에 附着하여 公知의 型틀에 재치한 것에 대하여 各號는 主연부가 약간 上向으로 단곡되고 바닥면에 돌조무늬가 形成된 평판상의 대판을 型틀의 内部에 押着토록 되어있는 것이어서 化粧판을 대판에 부착하지 아니한 점이 相異하고 本件考案은 무늬化粧판을 型틀의 低面部에 재치하거나 또는 型틀의 上部에 뒤집어 씩워 使用하도록 된 것인데 비하여 (가)號는 돌조무늬가 形成된 평판상의 대판을 型틀내부에 插着하도록 되어있어 兩者는 構成이 相異하며 또한 本件考案이 化粧판과 대판을 型틀에 재치하여 시멘트를 充墳하거나 대판을 型틀의 위에 뒤집어 씩운 후 型틀과 化粧판을 다 除去하거나 또는 化粧판은 附着한 채 型틀만을 除去하여 양생을 하는 것이나 (가)號는 대판이 插着된 型틀 내에 시멘트를 充墳하여 그대로 양생한 다음 型틀의 고리를 풀고

형틀과 대판을 除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兩者는 作用效果도 相異한 것이라는 事實을 確定한 다음 토건재의 表面에 무늬를 形成하기 위해 판채에 무늬를 彫刻하는 것은 오래된 公知의 事實로서 公知된 排他的 權利가 미칠수 없고 또한 兩者의 考案은 (가)호에 무늬가 形成된 데에 한하여 構成과 作用效果가 相異한 것이어서 (가)호는 本件考案의 權利範圍에 屬하지 아니한다고 判斷하고 있다.

記錄에 의하여 살펴건대 原審의 위와같은 事實認定에 거친 證據取捨過程을 檢討하여 보아도 正當하고 그와같은 事實關係 아래서 한 原審의 위 判斷은 正當하며 原審決에 所請과 같은 採證法則을 違背하거나 實用新案의 權利範圍에 관한 法意를 誤解한 違法이 있다할 수 없어 論旨는 理由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一 參 考

抗告審判

1979年 抗告審判(당) 第61號

抗告審判請求人：박찬인

被抗告審判請求人：협신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

위 當事者間의 1978年 審判第151號(登錄 第7543號 實用新案無效審判)의 審決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本件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投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審 決

1978年 審判 第151號

審判請求人：협신콘크리트공업주
식회사

被審判請求人：박찬인

위 當事者間의 登錄 第7543號 實用新案의 權利範圍確認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가)호 圖面 및 그 說明書에 記載된 보도블럭 製造裝置는 登錄 第7543號 實用新案의 權利範圍에 屬하지 아니한다.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